

산세율, 주정부(province of Ontario)가 정하는 교육세율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.

- ① 평가액 × 기초단체 세율 = 기초단체 분 재산세액
- ② 평가액 × 교육세율 = 교육세분 재산세액
- ③ 납부세액 = ① + ②

재산평가원의 평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동 평가원에 재심청구(request for reconsideration)를 할 수 있다. 재산평가원의 결정에 대해서도 불복하는 경우에는 독립심판기관인 평가심의위원회(Assessment Review Board)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. 동 위원회의 결정은 청구인과 재산평가원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다.

5. 재산세의 부과취소 · 감면 · 환부

시의회(city council)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부과취소(cancellation), 감면(reduction), 환부(refund)를 할 수 있다.

- ① 수리 또는 레너베이션(renovation)으로 과세기간중 최소한 3월 이상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
- ② 최종 평가대장이 확정된 후 비주거용 건물(non-residential property)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
- ③ 최종 평가대장이 확정된 후 비과세대상 재산으로 인정된 경우
- ④ 화재 또는 멸실, 중대하고 명백한 평

가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(gross and manifest error in the assessment)

- ⑤ 납세의무자의 질병 또는 극도의 궁핍으로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

6.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징수유예

65세 이상의 노인과 온타리오 장애자보조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자는 재산세 징수유예(deferral)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. 징수유예는 당해연도의 재산세에 한하며, 체납세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. 징수유예 신청은 매년 해야 한다. 이는 매년 징수유예 자격이 되는 지를 심사하기 위한 것이다. 징수유예는 웹 사이트, 이메일, 우편,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.

7. 자선사업에 대한 환급

최근 온타리오주에서는 자선사업(charities)에 대한 재산세 환급제도(rebate)가 도입되었다. 자선사업자는 납부세액중 최소한 40%를 환급받게 되며, 환급율은 시의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. 환급신청은 1월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까지이다. 환급액의 50%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, 나머지 50%는 120일 이내에 환급된다. 자선사업자의 범위는 소득세법(Canada Income Tax Act)에 규정되어 있고, 캐나다 관세세입청(Canada Customs and Revenue Agency)으로부터 등록번호